

##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

The regulations for the basis of the drinking Water quality

제정 1984. 3. 31 보건사회부령 제774호  
제정 1990. 1. 11 보건사회부령 제841호  
제정 1991. 7. 4 보건사회부령 제871호  
제정 1992. 12. 15 보건사회부령 제897호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, 공동급수시설등으로부터 공급되는 음용수와 그 원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, 기타 음용수의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[전문개정 '91.7.4]

제 2 조(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) ①수도법 제18조 및 공중위생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공동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.(개정 '91.7.4)

②제1항의 수질기준의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
③삭제('91.7.4)

제 3 조(원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) 삭제('92.12.15)

제 4 조(수질검사신청) 수도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,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'91.7.4)

제 5 조(수도사업자에 의한 수질검사) ①수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업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.(개정 '91.7.4)

1. 정수장에서의 검사

가. 별표 1중 냄새·맛·색도·탁도·수소이온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:

매일 1회이상

나. 별표 1중 대장균군·일반세균·암모니아성질소·질산성질소·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: 매주 1회이상

다. 별표 1의 전항목에 관한 검사 : 매월 1회이상

2. 수도전에서의 검사

별표 1의 일반세균·대장균군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: 매월 1회이상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추출되는 수도전에 대하여 한다.

③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검사외에 특정물질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

경우에는 그 물질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 
(개정 '91.7.4)

제 6 조(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공급될 음용수의 수질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.(개정 '91.7.4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때에는 수원을 변경하거나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질기준을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음용수의 수질을 별표 4의 검사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매 6월마다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.(개정 '91.7.4)

④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때에는 정수시설을 개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수질기준을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
⑤삭제('71.7.4)

제 7 조(건강진단) ①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매 3월마다 1회 행한다. 다만,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수도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생된 점염병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.(개정 '91.7.4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수도의 취수장·정수장 또는 배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것이어야 한다.

③공동급수시설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 이 경우 수도는 공동급수시설로 본다.(개정 '91.7.4)

제 8 조(위생상의 조치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.(개정 '92. 12.15)

1. 수도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준하는 위생상 필요한 조치
2. 월 1회이상 간이급수시설 또는 공동우물주변에 대한 별표 5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의 실시

제 9 조(검사기자재의 확보등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급수시설의 수질 관리상 필요한 검사기자재·시약 및 소독약품을 확보·공급하여야 한다.(개정 '91.7.4)

②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실시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할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수질검사결과의 보고) ①시·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매월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전에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 
②시·도지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 6월마다 실시한 공동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시기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[본조실설 '91.7.4]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령의 폐지)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·수질검사방법·건강진단 및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#### 부 칙('86. 7.10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'90.1.11)

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'91. 7. 4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검사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, 동항동호 다목의 검사중 세레늄·다이아지논·파라티온·말라티온 및 폐니트로티온에 대한 검사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'91.12.15)

이 규칙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제1호 다목의 검사중 카바릴1.1.1-트리클로로에탄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※별표 2~5 생략

[별표 1](개정 '91.7.4)

음용수이 수질기준(제2조 관련)

1. 미생물에 관한 기준

가. 일반세균(보통한천배지에서 무리를 형성할 수 있는 세균을 말한다)은  $1\text{m}\ell$ 중 100을 넘지 아니할 것.

나. 대장균군(그람음성의 무아포성의 단간균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만드는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을 말한다)은  $50\text{m}\ell$ 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.

2.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

가. 납은  $0.1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나. 불소는  $1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다. 비소는  $0.05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라. 세레늄은  $0.01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마. 수은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.

바. 시안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.

사. 6가크롬은  $0.05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아. 암모니아성질소는  $0.5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자. 질산성질소는  $10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차. 카드뮴은  $0.01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3.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

가. 폐놀은  $0.005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나. 총 트리할로메탄은  $0.1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다. 다이아지논은  $0.02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라. 파라티온은  $0.06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마. 말라티온은  $0.25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바. 페니트로티온은  $0.04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사. 카바릴은  $0.07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아. 1.1.1-트리클로로에탄은  $0.1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자.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 $0.01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차. 트리클로로에틸렌은  $0.03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4.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

가. 경도는  $300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나.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 $10\text{mg}/\ell$ 를 넘지 아니할 것.

- 다.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.
- 라. 동은  $1\text{mg/l}$  를 넘지 아니할 것.
- 마.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.
- 바. 세제(음이온계면활성제)는  $0.5\text{mg/l}$  를 넘지 아니할 것.
- 사. 수소이온농도는 pH 5.8내지 8.5이어야 한다.
- 아. 아연은  $1\text{mg/l}$  를 넘지 아니할 것.
- 자. 염소이온은  $150\text{mg/l}$  를 넘지 아니할 것.
- 차. 증발잔류물은  $500\text{mg/l}$  를 넘지 아니할 것.
- 카. 철 및 망간은  $0.3\text{mg/l}$  를 넘지 아니할 것.
- 타. 탁도는 2도를 넘지 아니할 것.
- 파. 황산이온은  $200\text{mg/l}$  를 넘지 아니할 것.